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7
----------	-----

2023. 6. 23.(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변종오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6월 13일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변종오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관련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 혼동을 막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 · 벤처연구센터 관리 · 운영 조례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위치를 수정함(안 제2조)

- 상위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를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명칭이 명확히 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3. 6. 2.~'23. 6. 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률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7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변종오,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유재목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관련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 혼동을 막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위치를 개정함(안 제2조)

다. 상위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를 신설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2023. 6. 2. ~ 6. 8. (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예고)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편의시설 제공 및”을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육성을”을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 중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로, “청원군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라 한다) 내”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센터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을 각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과 관련된”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기업 및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기업에게 그 밖의 편의시설 제공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도내 시·군이 센터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운영비 지원)”을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을 “요구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시설 이용료는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용수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시설별 이용료

구 분		면적(m ²)	금 액	비 고
게스트하우스	스탠다드(1인)	22	35천원/일	부가가치세 포함
	특실(2인)	45	60천원/일	
	다인실(5인)	47	80천원/일	
회의실	대회의실	713	65천원/시간	부가가치세 별도
	중회의실 1~3	101~103	25천원/시간	
	중회의실 4	132	40천원/시간	
	소회의실	65	20천원/시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u> <u>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u> <u>관리·운영 조례</u>	<u>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u> <u>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u> <u>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첨단 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기업에게 다양한 <u>편의시설</u> 제공 및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u>벤처기업</u> 육성을 위한 벤처연구센터의 <u>관리·운영</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u>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는 <u>청원군 오송읍 첨단 의료복합단지</u>(이하 “오송첨복단지”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3조(<u>센터의 기능</u>)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u>에게 벤처연구실 제공 2. <u>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u>에게 공동장비실 제공	제1조(목적) ----- ----- ----- <u>편의시설</u>을 제공하 <u>고</u> ----- ----- <u>벤처기업</u>을 육성 <u>하기</u> ----- <u>관리 및</u> <u>운영</u>----- -----. 제2조(위치) ----- <u>커뮤니케이</u> <u>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u>----- ----- <u>청주시 흥덕구 오송읍</u> <u>첨단의료복합단지</u>----- -----. 제3조(<u>기능</u>) ----- -----. 1. <u>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u> <u>기관·기업</u>----- 2. <u>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u> <u>기관·기업</u>-----

3.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
에게 회의실 제공

4.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
과 관련된 연구원에게 숙박시
설 제공

5.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
에게 그 밖에 편의시설 제공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
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
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
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이용료 징수) ① 센터 시설

3.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기업----

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기업 및 관련 -----

5.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기업에게 그 밖의 편의
시설 제공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도지
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센터 시설을 이

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임대료 등 그 밖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료 또는 시설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도내 시·군이 센터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하
 여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
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
 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
 ---- 관리 및 운영 -----
 -----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
 -----.
 ② -----

 -- 요구할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⑤ (생략)

[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1.~4.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관련 조례와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